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27

2022. 2. 14.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29일, 김태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2.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김태수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2020. 8. 5.)」 및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청년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5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15%로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청년의 정의(안 제2조 제4호 신설)

○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 관련 위원회의 청년 참여 비율을 입법화하기 위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과거 법령마다 청년의 범위가 상이해 혼선을 야기하였으나, 「청년기본법」이 제정(2020.2)되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었음.

< 청년의 정의 >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이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청년사업의 청년대상 연령을 고려해 「청년기본법」보다 확대해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음.

<서울시 청년 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

정책명	청년의 범위	관련 근거(조례 등)
청년수당	만19세~만34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청년일자리	*만18세~만34세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 조례」 제2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 만18세 : 고졸 기준
청년주택	만19세~만39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청년공간	만19세~만39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창업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위원	만19세~만39세	- 계획서
청년미취업자 지원	15세~29세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개정안은 위원회의 청년위원 참여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조례”)를 참고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정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위원 위촉 비율 명시(안 제8조 제5항 신설)

○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고(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는 50% 이상, 청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1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청년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 제3항).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위원회의 의결(2021.12)을 거쳐 27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청년위원회는 50% 이상, 그 외 청년친화위원회는 10%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음(청년친화위원회 현황은 붙임자료2 참고).

-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거나 청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의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고 불명확함.

○ 개정안은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서울시가 정한 10% 이상보다 높은 15% 이상으로 명시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청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청년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정한 상황에서 다른 조례가 15% 이상으로 상향 규정하는 경우 두 조례 간 입법 충돌과 해석 및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령 기준에 맞춰 청년위원의 비율(10% 이상)을 조정하고 향후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조례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5%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청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행정절차에 따라 서울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10%로 정한 점을 감안하여 안 제8조제5항 중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시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함(안 제8조제5항).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27

제안년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청년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행정절차에 따라 서울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10%로 정한 점을 감안하여 안 제8조제5항 중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시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함(안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5항 중 “15% 이상”을 “10%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5%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⑥ ~ ⑧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